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97

提出年月日: 1996. . .

提 出 者:大田廣域市長

1. 提案 理由

○ 大田廣域市가 施行하는 各種 試驗의 試驗問題 出題委員, 面接 試驗委員, 實技試驗委員 등 試驗委員과 監視官 등에게 支給하는 試驗手當은 本 條例의 別表의 基準에 의하여 執行되는 바,

○ 그동안 運營은 內務部의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이 바뀔 때마다 條例의 別表를 改正하여 시행해 왔음.

○ 市의 各種 條例에서 手當支給 基準을 豫算의 範圍 안에서 支給토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試驗手當 支給條例도 다른 條例와一貫性을 維持하고, 彈力性 있는 運營에 寄與하기 위해 本 條例에는 手當支給根據만을 두고, 手當支給 金額은 豫算編成指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判斷되어 條例를 改正, 試驗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려는 것임.

2. 主要 骨子

ㅇ 手當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支給하도록 함. (案 第2條)

現 行: 手常은 別表의 基準에 의하여 支給할 수 있다 政 正: 手當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支給할 수 있다.

3. 參考事項

o 地方公務員任用令 第48條 第5項

試驗委員·試驗監督官 및 試驗編輯要員의 手當과 旅費에 관하여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內務部長官 또는 教育部長官이 施行하는 試驗委員·試驗監督官·採點要員 및 試驗編輯要員의 手當과 旅費는 內務部長官 또는 教育部長官이 豫算의範圍안에서 정한다.

○ '96年度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基本指針 (別添)

대전광역시조례 호

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당)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2조(수당) 수당은 <u>별표의 기준에 의하여</u> 지급할 수 있다	현 	ð	개 정 안
		별표의 기준에 의하여	
		*	

'9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

□ 시험수당

구 분	단 위	단 가
1	2 11	2 /
ㅇ 출제수당	(6)	
기자자사	₩ -0 F)	0.000.01
- 객관식	문 제 당	3,000원
— 주관식	과 목 당	45,000원
ㅇ 채점수당		
— 객관식	10문제당	11워
— 주관식	ب ، ت	- 1-
기본료 기본료	10부까지	30,000원
호 과	부 당	800위
	1 0	000 <u>1</u>
ㅇ 문제선정·심의수당	과 목 당	35,000원
		_
ㅇ 문제편집·편찬수당	일 당	7,000원
ㅇ 감시수당	일 당	평일 6,500원
		휴일 10,000원
		ਜ ਦ 10,000 ਦ
○ 면접 · 실기시험수당		
8		e e
- 5 급	일 당	30,000원
— 6급이하	일 당	15,000원